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7허6675 등록무효(디)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7. 11. 30.

판 결 선 고 2017.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7. 8. 21. 2017당176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3호증)

-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787944호/2014. 5. 12./2015. 3. 6.
- (2) 물품의 명칭 : 구이판
-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 디자인등록 제766555호/2013. 9. 27./
2014. 10. 13./2014. 10. 20.
- (나) 물품의 명칭 : 조리용 팬
- (다) 도면 : [별지 2]의 '가'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

-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 디자인등록 제734538호/2012. 11. 6./
2014. 3. 11./2014. 3. 20.
- (나) 물품의 명칭 : 불고기판
- (다) 도면 : [별지 2]의 '나'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6. 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① 그 출원일 전에 출원되고 출원일 후에 등록공고된 선행디자인 1의 일부와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해당하거나, ②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출원일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2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7당1762)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8. 2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의 일부와 유사하지 않아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고, 선행디자인 2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아니어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심결취소사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의 일부와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거나, 선행디자인 2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의 상부 테두리에 형성된 홈의 형성 위치, 배열 및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의 각 요부인 홈이 형성된 상부 테두리는 그 전체적인 형상이 타원형과 원형으로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 테두리가 타원형인 점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갑 제6호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조리도구 분야에서 매우 일반적인 형태에 불과하다.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 테두리에 형성된 홈의 밀집도 변화는 원형 테두리

를 타원형의 테두리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형태 변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선행디자인 1, 2와의 홈의 밀집도 차이가 크지 않아 일반 수요자가 자세히 관찰하지 않는 이상 디자인의 특징적 형태로 인식하기 어려워 그로 인한 전체적인 미감의 차이가 크지 않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선행디자인 1 관련)

(1) 관련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은 "디자인등록을 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후출원디자인이 그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보에 게재된 선출원디자인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특허법원 2011. 10. 13. 선고 2011허5519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

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등 참조).

(2) 선행디자인 1의 대비 적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2014. 5. 12. 출원되었고, 선행디자인 1은 그 전인 2013. 9. 27. 출원되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후인 2014. 10. 20. 등록공고 되었으므로, 선행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출원되고 출원일 후에 등록공고된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 해당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그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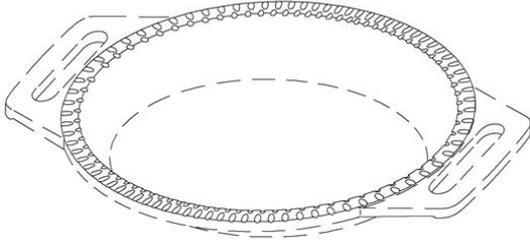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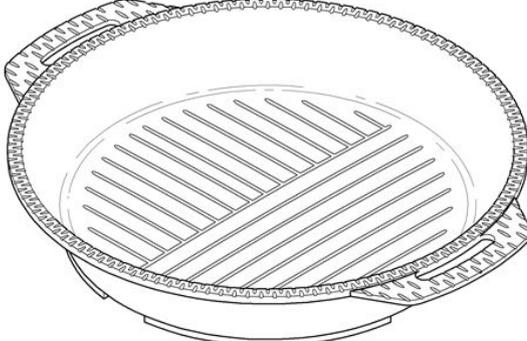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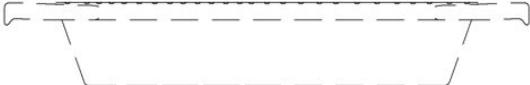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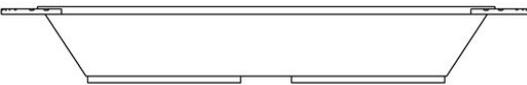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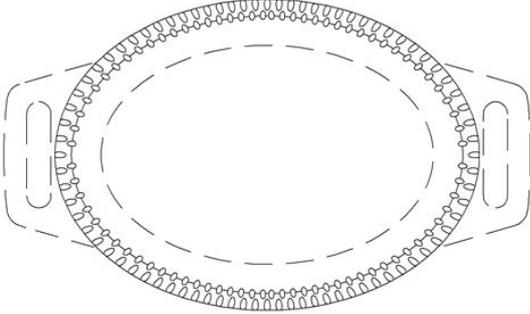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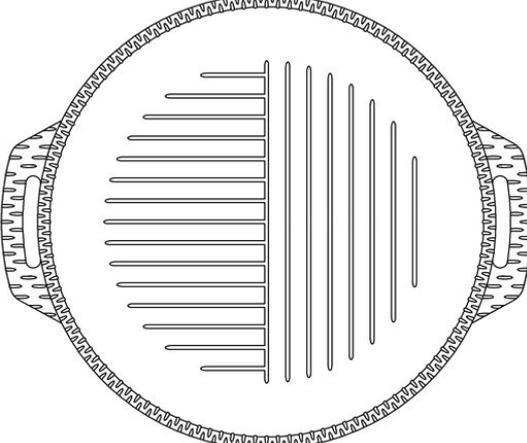
(3) 대상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구이판'이고, 선행디자인 1의 대상 물품은 '조리용 팬'으로서 그 물품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되는 조리용 용기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이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의 일부와 유사한지 여부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 있는 사시도, 정면도 및 평면도와 이에 대응되는 선행디자인 1을 대비하면 아래 대비표와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상부 테두리 부분)만 디자인 등록으로 보호 받고자 하는 부분디자인으로서,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점선 부분을 포함한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위치·크기 및 범위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하 그 상부 테두리 부분과 선행디자인 1의 일부인 상부 테두리 부분을 아래 대비표에 따라 대비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할 수 있다.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나) 공통점 및 차이점

1) 공통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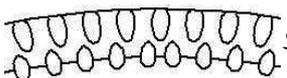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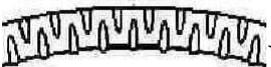
양 디자인 모두 조리기구의 상부 테두리를 따라 내측 홈과 외측 홈으로 구성된 2단의 홈이 각기 엇갈리게 연속 형성되어 있다.

2) 차이점

㉠ 상부 테두리 전체의 형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 테두리는 타원형인 반면, 선행디자인 1의 상부 테두리는 원형이다(평면도 참조).

㉡ 2단 홈의 비중, 면적, 위치에 따른 규칙성 유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2단의 홈 중 내측 홈이 테두리의 내측에 치우치게 와 같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내측 홈과 외측 홈의 2단의 홈이 테두리의 폭 방향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내측 홈과 외측 홈의 경계로 느껴지는 부분이 테두리의 중간에 위치되게 와 같이 형성되어 있다.

㉢ 홈의 밀집도(원주방향 간격)의 균일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홈들이 타원의 원주 중 가운데 길쭉한 부분으로 향할수록 더 조밀하게 배열되고 양측 뾰족한 부분으로 향할수록 그 간격이 넓게 배열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그 홈들이 전체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다(사시도 및 평면도 참조).

㉣ 개별 홈의 형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외측 홈은 일단이 절개

된 둥그런 타원형상이고 내측 홈은 외측 홈보다 작은 크기로 (일단이 절개된) 계란 또

는 타원의 형상으로 구성된 반면, 선행디자인 1은 ,  와 같이 서로 180° 위상차

를 가질 뿐 외측 홈과 내측 홈 모두 일단이 절개된 뾰족한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공통점과 차이점의 전체적 검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양 디자인이 표현된 상부 테두리의 전체 형상과 홈들의 전체적인 배열형태 및 홈의 구체적인 형상 등에 관한 위 차이점들은 디자인을 지배하는 특징에 관한 것으로서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므로, 위 공통점만으로는 양 디자인을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차이점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은 부분인 상부 테두리의 전체적인 형상에 관한 것이고, 선행디자인 1에서도 조리시 눈에 잘 띄는 요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이 다른 이상 그 부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공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사 여부 판단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다.

② 차이점 ㉡, ㉢은 조리기구의 상부 테두리를 따라 형성된 홈들의 원주방향 및 폭 방향 배열형태에 관한 것으로서, 양 디자인의 요부인 상부 테두리 전체에 걸친 차이점들이다. 게다가 위 차이점들은 디자인 전체의 규칙성 유무에 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환기되는 심미감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③ 차이점 ㉣은 비록 그 차지하는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요부인 상부 테두리에

관한 부분으로서 조리시 눈에 잘 띄는 부분에 관한 것이다. 게다가 조리기구의 상부 테두리는 그 자체로 매우 좁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차이점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반면, 양 디자인의 공통점은 조리기구의 상부 테두리를 따라 내측 홈과 외측 홈으로 구성된 2단의 홈이 각기 엇갈리게 연속 형성되어 있다는 것일 뿐으로서, 이러한 공통점만으로 위 차이점들을 모두 압도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응 부분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검토결과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의 일부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선행디자인 1에 대한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선행디자인 2 관련)

(1) 관련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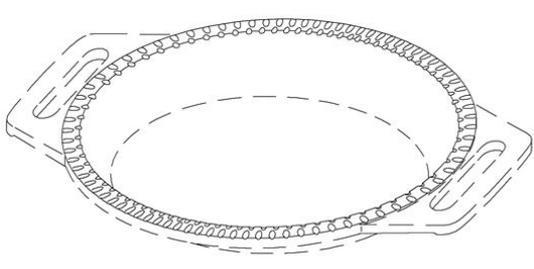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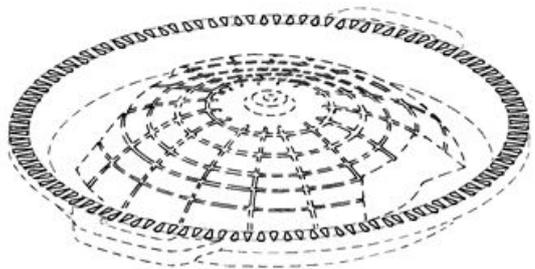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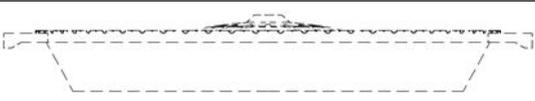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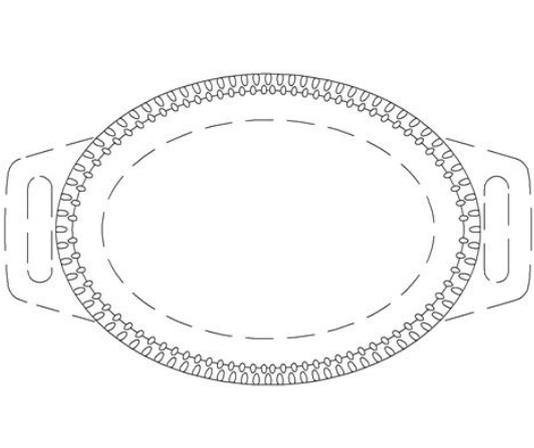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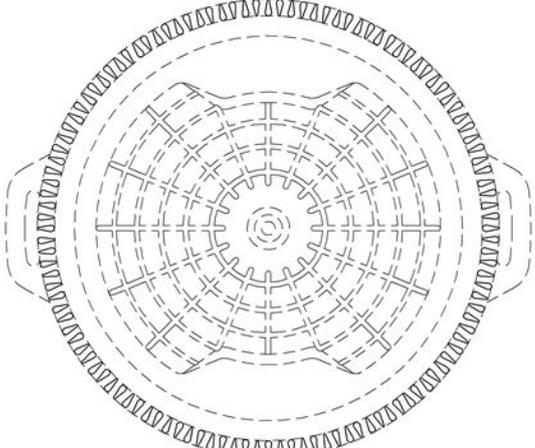
(2) 대상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구이판'이고, 선행디자인 2의 대상 물품은 '불고기판'으로서 그 물품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되는 조리용 용기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이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선행디자인 2에 의한 용이 창작 여부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 있는 사시도, 정면도 및 평면도와 이에 대응되는 선행디자인 2를 대비하면 아래 대비표와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상부 테두리 부분)만 디자인 등록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디자인으로서,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점선 부분을 포함한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위치·크기 및 범위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하 그 상부 테두리 부분과 선행디자인 2의 일부인 상부 테두리 부분을 아래 대비표에 따라 대비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할 수 있다.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나) 공통점 및 차이점

1) 공통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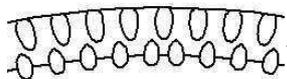
양 디자인 모두 조리기구의 상부 테두리를 따라 홈이 연속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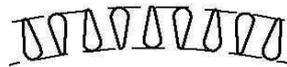
2) 차이점

㉠ 상부 테두리 전체의 형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 테두리는 타원형인 반면, 선행디자인 2의 상부 테두리는 원형이다(평면도 참조).

㉡ 2단 홈의 유무 및 그에 따른 규칙성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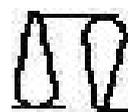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홈이 2단으로 형성되고 그 2단의 홈 중 내측 홈이 테두리의 내측에 치우치게 와 같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

디자인 2는 홈이 일렬로 교차하여 나란하게 와 같이 형성되어 있다.

㉔ 홈의 밀집도(원주방향 간격)의 균일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홈들이 타원의 원주 중 가운데 길쭉한 부분으로 향할수록 더 조밀하게 배열되고 양측 뾰족한 부분으로 향할수록 그 간격이 넓게 배열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2는 그 홈들이 전체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다(평면도 참조).

㉕ 개별 홈의 형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외측 홈은 일단이 절개된 둥그런 타원형상이고 내측 홈은 외측 홈보다 작은 크기로 (일단이 절개된) 계란 또는 타원의 형상으로 구성된 반면, 선행디자인 2는 와 같이 서로 180° 위상차를

가질 뿐 모두 물방울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용이 창작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차이점들(특히, 차이점 ㉔, ㉕, ㉖)을 모두 극복하고 선행디자인 2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

① 양 디자인이 표현된 상부 테두리의 전체 형상과 홈들의 전체적인 배열형태 및 홈의 구체적인 형상 등에 관한 위 차이점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차이점들에 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성들이 선행디자인 2의 해당부분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 테두리 타원형상에 관한 차이점 ㉠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조리기구들의 상부 테두리 타원형상(갑 제6호증)의 결합에 의하여 그 극복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차이점 ㉡, ㉢, ㉣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이점들에 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성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차이점 ㉡, ㉢은 조리기구의 상부 테두리를 따라 형성된 홈들의 원주방향 및 폭 방향 배열형태에 관한 것으로서, 양 디자인의 요부인 상부 테두리 전체에 걸친 차이점들이다. 게다가 위 차이점들은 디자인 전체의 규칙성 유무에 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환기되는 심미감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 차이점 ㉣은 비록 그 차지하는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요부인 상부 테두리에 관한 부분으로서 조리시 눈에 잘 띄는 부분에 관한 것이다. 게다가 조리기구의 상부 테두리는 그 자체로 매우 좁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차이점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나아가 차이점 ㉡, ㉢, ㉣에 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성들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한 변경·전용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인

정할 증거가 없다.

(4) 검토결과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므로 선행디자인 2에 대한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에 대한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고, 선행디자인 2에 대한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수

 판사 나상훈

 판사 이호산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구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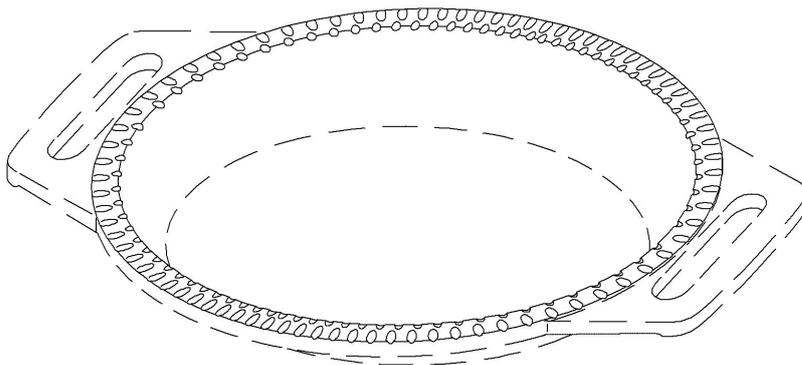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임.
2. 도면 중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3. 구이판의 상부 테두리를 따라 규칙하게 홈이 연속하여 배열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구이판 디자인은 상부 테두리를 따라 규칙적인 모양의 홈을 연속해 형성하여 심플함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외형에 독창적 심미감을 갖도록 한 것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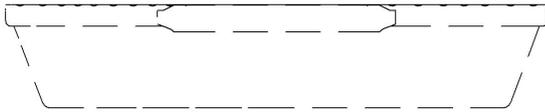
[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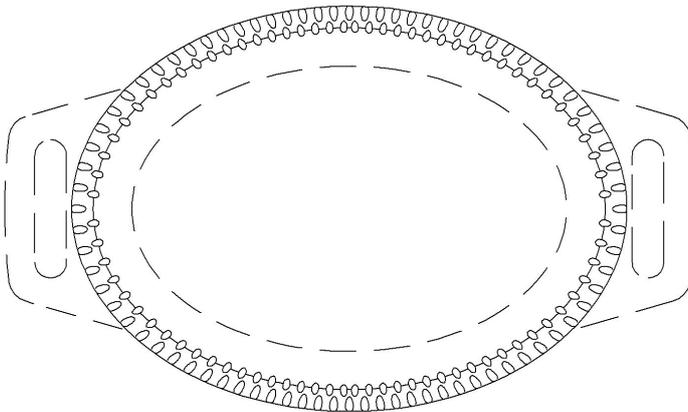
[정면도]

[배면도 - 정면도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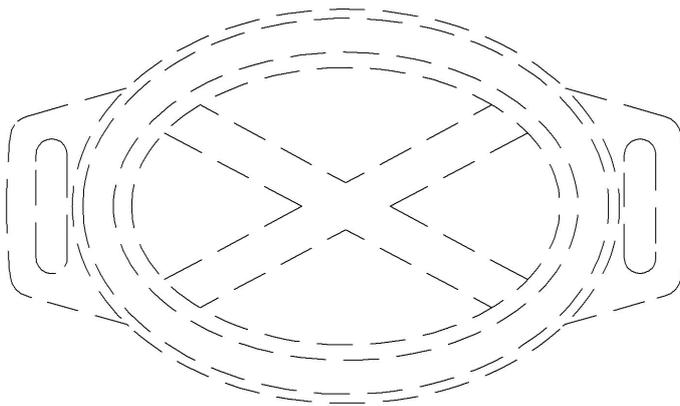


[좌측면도]

[우측면도 - 좌측면도와 동일]



[평면도]



[저면도]

[별지 2]

선행디자인들

가.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조리용 팬

【디자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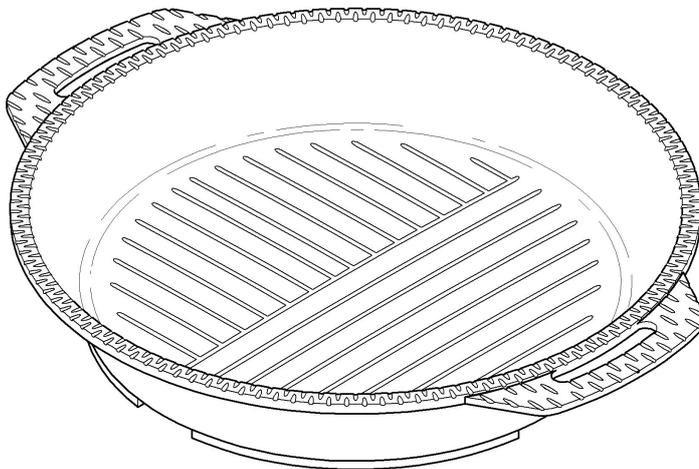
1. 재질은 금속임.

2. 본원디자인은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참고도 1.1 및 참고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원디자인의 바닥면에는 기름을 배출하기 위한 다수의 홈이 형성되며, 테두리부 및 손잡이부의 각 상측면에는 타원 형상의 다수의 함몰부가 형성되어 있음.

3. 도면 1.2는 정면도로서 정면도와 배면도는 동일하고, 도면 1.3은 좌측면도로서 좌측면도는 우측면도와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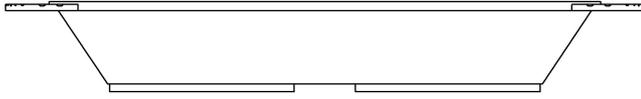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조리용 팬"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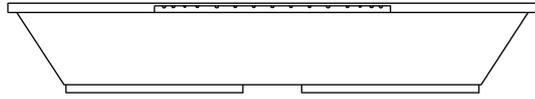


[도면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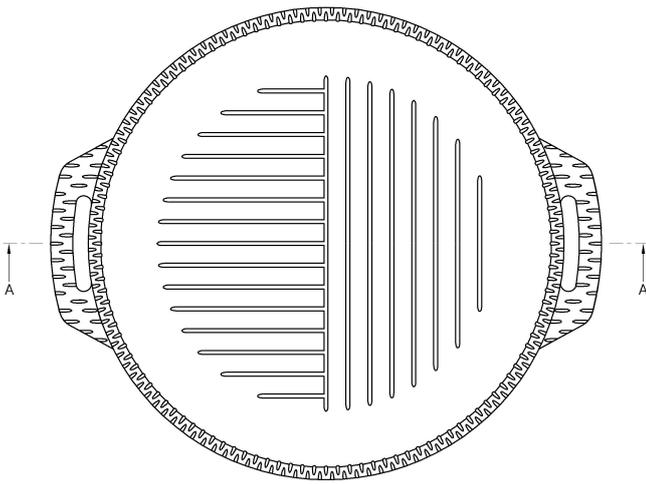
[도면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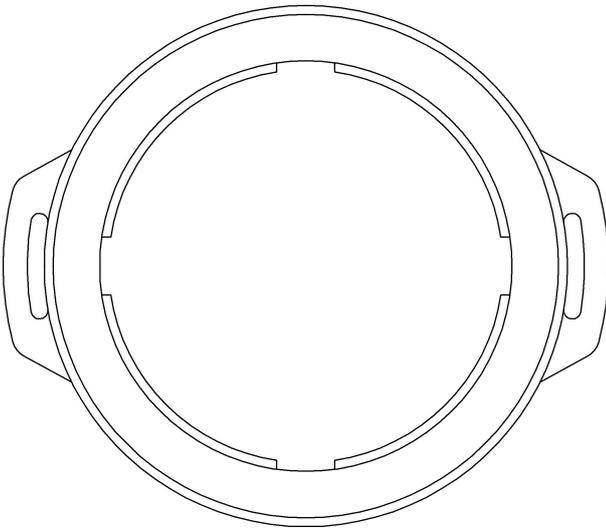
[도면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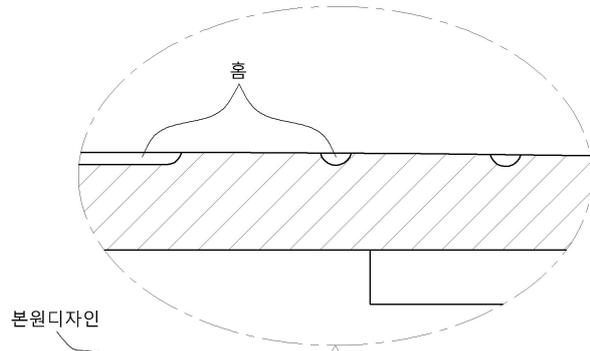


[도면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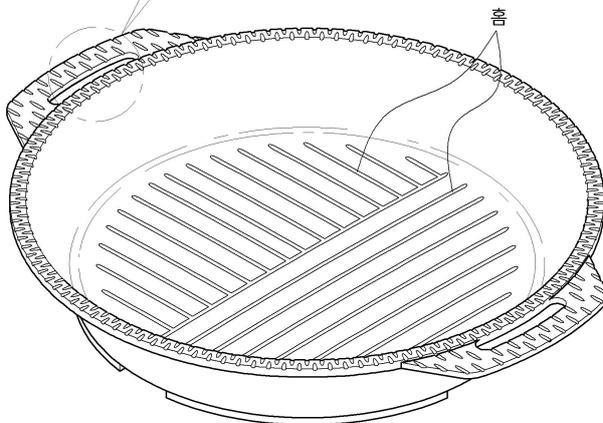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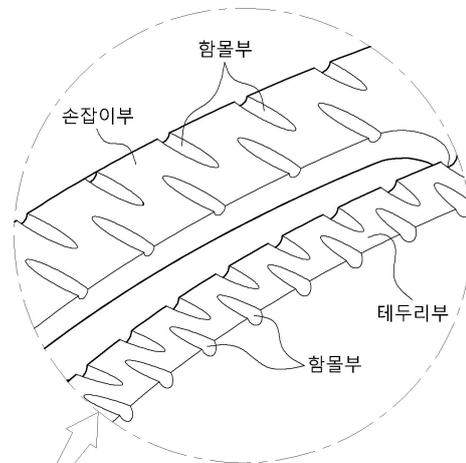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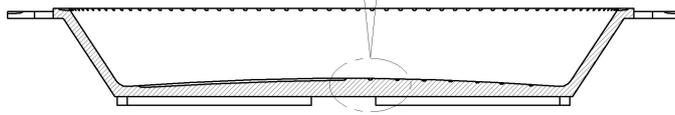


[도면 1.5]





[참고도 1.1]



[참고도 1.2]

나.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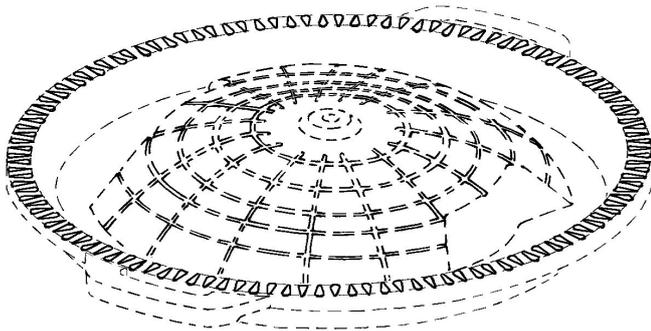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불고기판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임.
2. 도면 중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으로 불고기판의 상부 테두리를 따라 물방울 모양의 홈을 연속해서 형성한 것임.
3. 참고도 1은 A-A선 단면도를 도시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디자인인 불고기판은 상부 테두리를 따라 물방울 모양의 홈이 연속 배열되게 형성하여 전체적인 외형에 독창적인 심미감을 갖도록 한 것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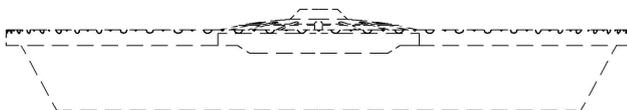


[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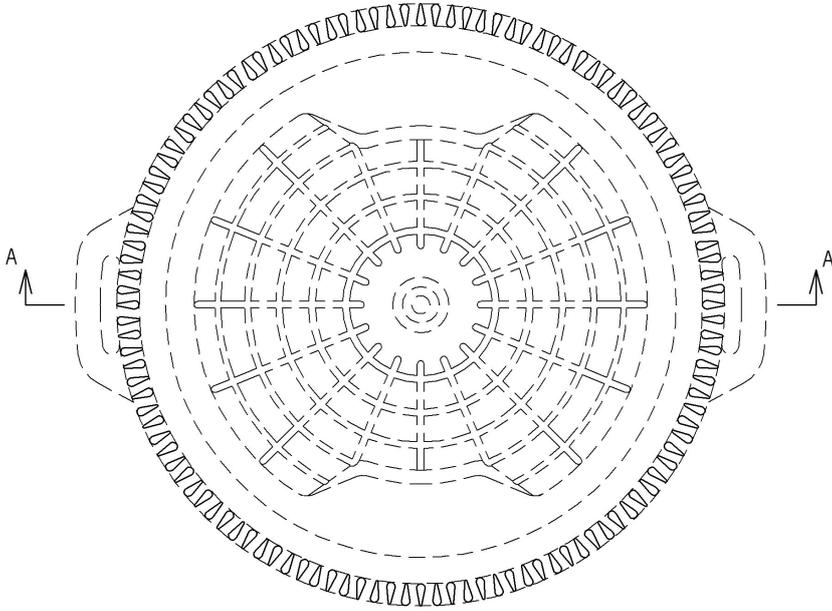
[정면도]

[배면도 - 정면도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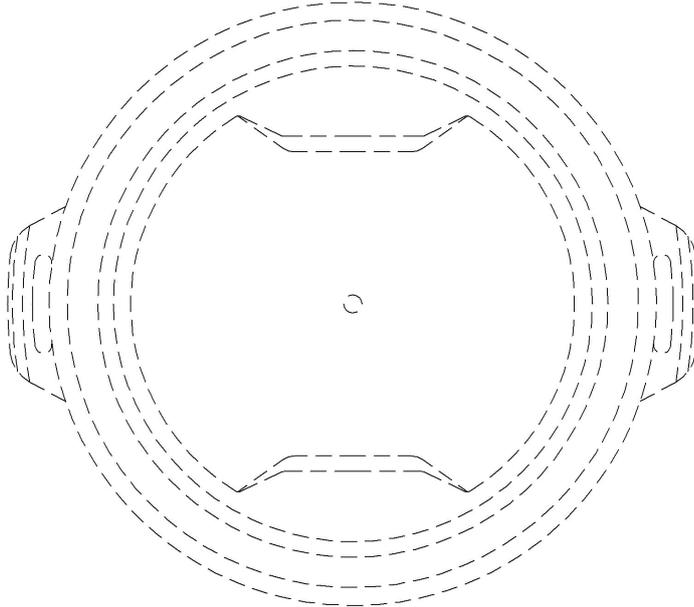


[좌측면도]

[우측면도 - 좌측면도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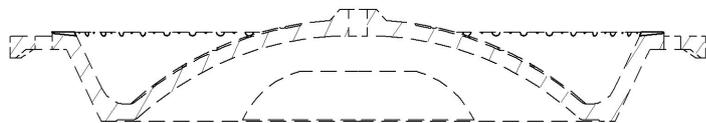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1 - A-A선 단면도]



. 끝.